
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7.

발 의 자 : 최은석 · 박덕흠 · 이준석
서명옥 · 이종배 · 권영세
진종오 · 안철수 · 구자근
신성범 · 김상훈 · 한지아
김성원 · 김장겸 · 이상희
김기웅 · 김기현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융·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5의 세율을,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,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 및 불용액은 매년 6조원 정도 발생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임. 그럼에도 최근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종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되어 금융·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. 이러한 세 부담 증가는 대출금리 및 보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 상승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, 특히 저소

특층·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.

이에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(1천분의 10)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(1천분의 5)로 환원함으로써,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).
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교육세액(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)”을 “교육세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천분의 5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융·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.

